

"서로"를 존중하는 학교에서,
"내가" 존중받는 사회인으로
성장합니다.

개정된
"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"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http://www.law.go.kr/

존중해주세요!

문의 → 근무 시간 내에

약속 시간을 정해 ← **상담**

교육활동 → 교육전문가인 교사에게 맡겨주세요!



충청북도교육청
Chungcheongbuk-do Office of Education

"달라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"



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,
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입니다!

충청북도교육청
Chungcheongbuk-do Office of Education

교육활동 침해?

(교육활동 침해 유형)

교원을 대상으로 한 **상해·폭행·협박·명예훼손·손괴** 등의 범죄 행위

교원을 대상으로 한 **성폭력** 등의 범죄 행위

교원을 대상으로 한 **불법정보 유통** 행위

그 밖에 교육활동을 **부당하게 간섭**하거나 **제한**하는 행위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!

이렇게 바뀌었습니다



1 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 강화

- 교육활동 침해 시 특별교육, 심리치료, 출석정지, 학급교체, 전학, 퇴학 조치 가능
- 피해 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 (심리상담, 치료, 요양 및 특별휴가 부여)

2 보호자의 책임 강조

-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이나 심리 치료에 보호자 참여 (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
-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

3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

(교육활동 침해 조치 심의 기관 일원화)

-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, 분쟁조정,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징계 조치 등을 모두 심의

4 관할청의 고발 의무

-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고 받은 교육감은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,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 의무